

■ [별지 제2호서식]

채무조정 요청서

☐ 신청인 기본사항

성명	생년월일	연락처	주소
홍길동	75.09.10.	010-	서울특별시 중구

☐ 채무조정 요청대상

본·지점	계좌번호	대출일자	잔액(원)
농·축협 00지점	000-0000-00	'22. 6. 1.	10,000,000

☐ 채무조정 요청사유

실직	폐업	질병 및 사고	소득 감소
☐	☐	☐	☐
기타			
☐ ()			

☐ 채무조정 요청 관련 안내사항

■ 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- ◇ 채무조정 요청권이란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개인채무자보호법”)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- ◇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.
 1.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 2.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이 진행 중인 경우
 3.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- ◇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1.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 2.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 3.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- ◇ 채무조정 요청 결과는 요청 후 채권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안내되며,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귀하가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.

◇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◇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3개월 이상 미납시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됩니다.

◆ 본 조합 채무뿐만 아니라 타 금융회사 채무 등 다중 채무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상담을 권해드립니다.

◆ 채무조정 요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
1.채무조정요청서 2.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3.채무조정안 4.변제능력 입증자료

※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으며, 상기 서류 외에 심사중 추가 서류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, 즉시 000(☎0000-0000)로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본인은 상기 항목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고,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안내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. 이에 귀 사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본인 : (인)

■ [별지 제3호서식]

채무조정안(채무자용)

□ 신청인 기본정보

(단위 : 원)

성명	생년월일	연락처	주소	
홍길동	75. 9. 10.	010-	서울특별시 중구	
직업	월평균 소득(A)	월평균 생계비(B)	금융비용(C) (타 대출 상환액)	가용소득 (D)
회사원	(A)	(B)	(C)	(D) = (A)-(B)-(C)

※ 월평균 소득(A)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소득 등의 합산을 말합니다.
월평균 생계비(B)는 한 달 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.

□ 채무조정 요청대상

본·지점	계좌번호	대출일자	잔액(원)
농·축협 00지점	000-0000-00	'22. 6. 1.	10,000,000

□ 채무조정 요청사항

(단위 : 원)

구분		조정 내용	
만기 연장	(Y / N)	희망 유예기간(최대1년)	
		개월	
상환 유예	(Y / N)	희망 변제기간(최대1년)	
		개월	
이자율 인하	(Y / N)	이자율	
		채무조정 전	채무조정 후
		%	%
이자 일부 유예 * 취약차주지원만 해당	(Y / N)	유예기간	
		유예비율	
		개월	%
이자 감면 * 취약차주지원 선택 불가	(Y / N)	□ 이자 감면 (워크아웃)	□ 연체이자 감면 (프리워크아웃)
원금 감면 * 워크아웃만 해당	(Y / N)	원금	
		채무조정 전	채무조정 후
기타 사항	(Y / N)	- (상환방법 변경) 만기일시상환방식 → 원리금균등상환방식 - (변제금충당순서 변경) 비용, 이자, 원금 순서 → 비용, 원금, 이자 순서	

년 월 일

신청인 본인 : (인)

□ 변제계획 불이행 및 채무조정 합의해제 관련 안내사항

-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불이행 시 납입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.
 1. 3개월 이상*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*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
 2.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
 3. 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
 4.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, 재산의 도피 및 은닉,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 5. 채무자가 본 조합에 채무조정 합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
 6. 채무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, 변제계획 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
 7. 채무자가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
 8.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

년 월 일

000협동조합 (인)

OOOO(조합명)

서울 00구 00로 00-00

(홈페이지: www.0000.co.kr, 대표전화 : 0000-0000)

■ [별지 제5호서식]

채무조정 결과통지문(승인)

항상 **농·축협명**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귀하께서 요청한 '채무조정'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자 : 전화번호 : 02-000-0000

☐ 신청인 기본사항

성명	생년월일	연락처	주소
홍길동	75.09.10.	010-	서울특별시 중구

☐ 채무조정 승인 대출

(단위 : 원)

계좌번호	잔액	대출일자
000-0000-00	10,000,000	'22. 6. 1.

☐ 유의사항

-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조정안 동의 여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.
- 기간 내에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.

<붙임1> 채무조정안

년 월 일

OOOO(조합명)

서울 00구 00로 00-00

(홈페이지: www.0000.co.kr, 대표전화 : 0000-0000)

■ [별지 제6호서식]

채무조정 결과통지문(거절)

항상 농·축협명을 이용해주시어 감사합니다.

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귀하께서 요청한 '채무조정'이 거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결정 내용에 대해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자 : 전화번호 : 02-000-0000

□ 신청인 기본사항

성명	생년월일	연락처	주소
홍길동	75.09.10.	010-	서울특별시 중구

□ 거절사유

☐ 당사 채무조정 합의해제 (최근 3개월)	☐ 채권의 소송, 조정, 중재 등 절차 진행중	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중
☐ 법원의 회생 또는 파산 절차 진행중	☐ 당사 수정·보완 요청 3회 이상 불응	☐ 소멸시효 완성
☐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 없이 재요청	☐ 내부기준에 따른 거절사유	☐ 내부기준에 따른 거절사유

□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회생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-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년 월 일

0000(조합명)

서울 00구 00로 00-00

(홈페이지: www.0000.co.kr, 대표전화 : 0000-0000)

■ [별지 제7호서식]

채무조정서

문서번호:

결정일자:

주 소: 원 01520 서울 중구

발 신: 동·북·연·방

수 신: 동·길·농(750/010-000000) 귀하

제 목: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결정 통지

1. 채무조정내역

1) 조정내용

(단위 : 원)

대출명	계좌번호	조정	원금	비용	이자	연체이자	합계	이율
		전						
		후						

2) 변제계획

(단위 : 원)

상환 유예	☐ (Y / N) ☐ 유예기간 : 6개월 ☐ 유예이자 : 10,000(원)	상환방법	☐ 원리금균등 ☐ 원금균등 ☐ 만기일시상환 ☐ 기타()
상환기간 (상환개월)	년 월 일 ~ 년 월 일 (0개월)	납입시작일	년 월 일
매월 납입일	20일	월납입액	500,000

3) 납입계좌정보

입금은행	계좌번호	예금주명
〇〇은행	〇〇〇-〇〇〇-〇-〇〇〇	〇〇〇〇

2. 채무조정 합의해제 기준

아래에서 정하는 채무조정 합의해제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.

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1조제1항 (채무조정 합의의 해제)

1. 3개월 이상*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*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
2.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
3. 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
4.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, 재산의 도피 및 은닉,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5. 채무자가 본 조합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
6. 채무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,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
7. 채무자가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
8.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

귀 사로부터 채무조정을 승인받음에 있어 귀 사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위와 같이 상환기로 합의합니다.

채무자 : 홍길동 (인 또는 서명)	채권자 : 000협동조합(인)
주민등록번호 : 750910-000000	주 소 : 서울 중구 세종대로 000
주 소 :	

년 월 일

■ [별지 제8호서식]

채무조정 해제통지서

문서번호:

결정일자:

주 소: 우11450 서울 중구

수 신: 홍길동 010-1234-5678 귀하

제 목: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해제 통지

☐ 해제사유

☐ 변제계획 불이행	☐ 사망	☐ 실종선고
☐ 허위사실 신고, 재산의 도피 및 은닉, 기타 책임 재산 감소행위 등	☐ 개인금융채무자 본인요청	☐ 희생 및 파산 결정
☐ 다른 채무조정 절차 확정	☐ 그 밖의 사유	

☐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회생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-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